

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

개정 2018년 12월 1일

개정 2017년 10월 25일

제정 2011년 12월 21일

시행 2011년 12월 21일

제1조(명칭)

이 위원회의 명칭은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시청자위원회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운영내규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,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권한과 직무)

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③ 시청자평가원 선임
- ④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

제4조(위원회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5조(후보자 공모)

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
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.

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, 추천단체 추천서), 접수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여부 등을 포함한다.

제6조(추천 단체)

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

2. 소비자 보호단체

3. 여성단체

4. 청소년 관련 단체

5. 변호사 단체

6. 언론관련 시민·학술단체

7.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
8. 노동단체

9. 경제단체

10. 문화단체

11. 과학기술관련 단체

12. 인권단체

13. 외국인 관련 단체(단,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)

14. 물류 · 유통 관련 단체(단,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)

② 위 제1항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

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정관이 있을 것

제7조(후보자 추천)

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
② 후보자 공모결과,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)

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.

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.

1.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
2.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
3. 정당법에 의한 당원

4.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5.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(시청자위원 추천단체)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제9조(후보자 선정)

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(선정위원회 구성)

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.

②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,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.

③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자율적으로 정한다.

④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⑤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)

제11조(위원의 해촉)

① 위원이 임기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훼손,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12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단,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)

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은 임기 중 제8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사임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 등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)

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3.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

-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시간, 장소, 안건 등 회의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소집 최소 3일 전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⑤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,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며,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⑥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들의 발언 내용,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)
- ⑦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

제15조(수당 등)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(대외공표)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.